

화순군농특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 12.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3. 12. 11

다. 상 정 일 자 : 2003. 12. 11

(제119회 화순군 의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농산과장 양 정 열

나. 제안사유

- 화순군에서 개발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포장재 디자인 및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그 사용기준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판매촉진을 통한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다. 주요내용

- 상표사용지정신청(안 제4조)
 - 상표사용지정을 받고자 하는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
- 상표사용지정 (안 제5조)
 - 군수는 상표사용 자격요건이 적합할 경우 상표사용을 지정하고 상표사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반려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상표의 책임 (안 제6조)
 - 상표사용자는 상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의 하자과 관련하여 반품, 교환등 구매자의 요구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정취소 (안 제9조)
 - (1)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불의를 발생한 경우
 - (2)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3)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자의 폐업등으로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 (4)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 출하하는 경우
- (5) 농약검사기관에서 잔류농약검출 위반건수가 2회 이상 통보된 경우
- (6) 전국공영도매시장에서 부적격품으로 통보된 횟수가 3회이상인 경우
- (7)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8) 상표사용 중지 또는 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 (9) 상표사용자의 사망 등 유고시
- (10)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한 경우
- (11)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에 3회이상 적발된 경우
- (12) 제품의 명백한 하자로 반품사고가 3회이상 발생한 경우
- (13) 기타 생산자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근성)

- 본 조례안은 화순군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차별화를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BI)를 2000년 11월 28일 운주골 화순이라 상표등록을 마쳤으며, 우수 농·특산물의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BI에 대한 인지도를 확보하고 이미지 혁신을 통한 생산자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고취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절차상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첨부 : 화순군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안

화순군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에서 개발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를 사용함에 있어 생산자단체 및 개인 등에게 그 사용기준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우수 농특산물의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소비자 인지도 향상과 판매촉진을 통하여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① 농특산물이라 함은 화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특산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이나 농·특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전통식품(이하 “가공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공동브랜드”라 함은 농산물·가공품 포장재에 표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고유상표를 말한다.

제3조 (상표의 문양) 농·특산물 포장재에 사용할 디자인(상표)은 『별표』 과 같다.

제4조 (상표사용 지정 신청) ① 상표사용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절차, 신청방법, 심사기준, 신청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5조 (상표사용지정)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심사하여 상표사용을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화순군농정심의회 의 심사를 거쳐 상표사용을 지정 할 수 있다.

② 상표사용을 지정함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반려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 (상표사용의 책임) ① 상표사용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상표사용자는 상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및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한다.

③ 상표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과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사후관리) 군수는 상표사용 지정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생산 현장, 품질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상표사용자에게 사용중지·보안·시정요구를 명할 수 있다.

제8조 (상표 사용정지) ①군수는 상표 사용자가 제6조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제7조의 보완·시정요구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상표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상표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상표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처분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지정 취소)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화순군농정심의회(유통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한 경우
2.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전업·폐업 또는 표준출하규격 폐지의 사유로 품질인증 제품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정 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5. 전국공영도매시장을 포함한 유사시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포함한 농약검사기관에서 통보된 잔류농약검출 위반건수가 2회 이상 통보된 경우
6. 전국공영도매시장에서 부적격품으로 통보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7.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8. 상표사용 중지 또는 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9. 상표사용자의 사망 등 유고시
10. 조사 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할 경우
11. 농산물 원산지표지 단속에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2. 제품의 명백한 하자로 반품사고가 3회이상 발생한 경우
13. 기타 생산자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②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상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유인된 상표는 폐기·말소하여야 한다.

제10조 (무단사용자에 대한 제재) 군수의 상표사용 지정을 받지 않았거나 사용지정이 취소 또는 사용정지 된 자가 상표를 사용할 경우 상표법 제66조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1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 이전에 사용되고 있는 상표사용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별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마크

1. 모양 및 색상



※ 모양, 색상, 문자, 글체는 “운주골화순 농산물 공동브랜드 매뉴얼”에 따른다.

2. 브랜드마크 의미

운주골화순 농산물 공동 브랜드마크는 청정지역의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청색과 녹색 계열의 색을 사용하였으며, 소비자에게 화순군의 이미지를 보다 깨끗하고 친근감있게 접근하고자 하였다.

황색의 새싹은 도약하는 화순군을 의미하며, 2개의 녹색띠는 산과 풍성한 들판을, 청색은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군민의 화합과 번영, 세계로 발전하는 운주골화순을 뜻한다.

3. 브랜드마크 작도법

브랜드마크는 운주골화순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체로서 주로 대내외적인 매체에 사용하며 일관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활용시에는 반드시 재생자료에 의한 확대·축소의 방법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재생은 매뉴얼에 예시된 바와 같이 그리드 시스템에 의하여 제작 활용한다.

브랜드마크가 가진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극대화 시키고 화순군의 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는 브랜드마크 활용원칙을 동일적으로 준수해야 한다.